

[별지 제1호 서식]

감사보고서

학교법인 숙명학원 이사장 귀하

사립학교법 제19조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와 학교법인 숙명학원 정관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숙명학원의 2023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, 동일로 종료되는 2022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, 운영계산서, 동 부속서류와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설립한 숙명여자대학교의 2023년 2월 28일 현재의 교비회계대차대조표, 동일로 종료되는 2022회계연도의 교비회계자금계산서, 교비회계운영계산서 및 동 부속서류를 시사와 질문 등의 방식으로 감사하였습니다.

감사 결과,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한 재무제표와 이에 관련된 사항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숙명학원 및 숙명여자대학교의 2023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 상태와 동일 자로 종료되는 2022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보고합니다.

2023년 4월 20일

학교법인 숙명학원

감사

감사

피감사기관장(입회인)

이사장

총장